

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

심사보고서

2017. 9. 5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7년 8월 23일
- 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30일
- 라. 상정일자 : 제2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제1차 사회건설위원회(2017. 9. 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복지국장 김인문)

가. 제안이유

- 다문화도시들 간 정책을 공유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가입함에 있어 “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”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협의회 개요
 - 명 칭 :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
 - 회원자격 :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하면서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 자치단체(현재 24개 자치단체 가입)
 - 사업 : 다문화 관련 제반사항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 등
 - 회비 및 분담금 : 연 360만원
-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필요성

-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타 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을 적극 공유할 필요성이 있고 내·외국인간 갈등해소와 중국동포 밀집지역 개선 등 지역현안에 대해 협력 및 해결방안 모색 필요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권대광)

-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「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」은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 공유와 다문화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, 해결방안 모색 등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,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5년 11월 기준으로 57,000¹⁾명으로,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,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.

※ 우리 구 외국인 현황 (2015.11.1.기준)

(단위:명)

구 분	계(명)	결혼 이민자	혼 인 귀화자	외국인 근로자	재외동포	유학생	외국인주민 자녀	기타
인 구	57,000	2,558	2,791	20,113	13,616	294	1,677	15,951

- 다문화 가족: 10,514명

- 이처럼 많은 외국인이 거주함에 따라 교육, 문화 등 우리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고, 생활문화, 언어 등의 차이로 내·외국인간 상호 이질감 및 갈등이 끊이지 않음.
- 따라서 외국인들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문제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
-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을 통하여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보공유와 정책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구 다문화 정책의 발

1) 2015.11.1.기준 행정안전부 인구주택조사

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「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」 가입 동의안

의안 번호	제 255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8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근거

가. 지방자치법 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

2. 제안이유

다문화도시들 간 정책을 공유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가입함에 있어 “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”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협의회명 :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

나. 구성기관 : 총 24개 자치단체

다. 주요내용

- 회원의 자격(안 제3조)
 -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하면서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 자치단체
- 임원의 구성(안 제4조)
 - 회장 1인, 부회장 1인, 정기회의에서 선출
- 사업 등(안 제10조)
 - 다문화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
 - 다문화 관련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
 - 다문화 관련 시책에 관한 조사 연구
 -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정책건의
 -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- 회비 및 분담금 등(안 제13조)

· 일반회비는 연360만원

라.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구성 필요성

-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며, 외국인 밀집도는 전국 최고로 타 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음

- 내·외국인간 갈등해소와 중국동포 밀집지역 개선 등 지역현안에 대해 협력과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

4. 참고사항

가. 협의회 규약

나. 참여기관현황 : 별첨

다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